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114호
- 다. 제출일자 : 2018. 8. 28
- 라. 회부일자 : 2018. 8. 28

2.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조성 및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경으로 기금전출금 300억원 편성.
- 나.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융자 지원 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고자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68,068	98,068	30,000	계	68,068	98,068	30,000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14,801	14,801	-	용자사업비	23,500	23,500	-
예탁금원금회수	-	-	-	비용자사업비	32,572	32,572	-
이자수입	785	785	-	기본경비	4	4	-
기타수입	6,331	6,331	-	예치금	11,992	41,992	30,000
보조금	9,262	9,262	-	반환금및기타	-	-	-
전입금	-	30,000	30,000				
예치금회수	36,889	36,889	-				

○ 수입변경 : 300억원 증가

- 전입금 300억원 증가 : (신설) 기타회계전입금 300억원
- ※ 기타회계전입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8년 추경 300억원)

○ 지출변경 : 300억원 증가

- 예치금 300억원 증가 :
- (당초) 119억 9천2백만원 → (변경) 419억 9천2백만원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¹⁾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수입계획(기타회계 전입금)과 지출계획(예치금)에 있어서 각각 3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검토의견

- 기후변화기금은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2016년도말	2015년도말	2014년도말	2013년도말
조성액	52,946	45,842	47,740	51,645	67,077

-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 감소 이후 전년도에 소폭 상승했지만, 2018년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²⁾ 등에 기인하여 기금 내 비용자성 사업비가 전년(117억 4천2백만원) 대비 207억 7천9백

1)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8~'22년까지 원전 1기 설비용량(1GW)에 해당하는 태양광 확대 보급

만원 증가되는 등 비용자성 사업비 비중³⁾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급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에서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한 바 있음.

〈비용자성/융자성 사업비 지출계획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비용자성		융자성		비용자성 지출계획	융 자 성 지출계획
	지출계획	지출	지출계획	지출		
지출액	7,409	11,742	16,800	13,070	32,521	23,500

- 따라서 본 변경안과 같이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입 조치하고 예치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기금의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이 2022년까지 추진됨에 따라 당분간은 기금 내 비용자성 사업비 지출⁴⁾이 커서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금번 추경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을 확보하거나 나아가 동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지출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기존 (A)	2018년 변경 (B)	증 감 (A-B)	비 고
지 출 합 계	(×9,262) 68,068	(×9,262) 98,068	30,000	
사 업 비	(×9,262) 56,571	(×9,262) 56,571	(×-) -	
융자사업	23,500	23,500	-	
비용자사업	(×9,262) 32,571	(×9,262) 32,571	(×-) -	
기본경비	4	4	-	
여유자금 예치	11,993	41,993	30,000	증 액

3) 비용자성 사업비 / 융자성 사업비 : 89.8%('17년) → 138.4%('18년)

4) '19~'22년까지 3,460억 8천3백만원 소요 예상